

# 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( I ) (육계관련)



농 립 부

##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(공공)

### ② 축산물 자조금 조성

#### 1. 목적

-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, 소비촉진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
- 자조활동자금의 조성 및 운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경쟁력 제고

##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
-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별로 거출금의 100%범위 이내에서 지원
- 자조금 조성 축종의 확대 유도
-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이 미흡하므로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, 특히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

#### 3. 근거법령

-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(2002.5.13 제정·공포)
- 축산법 제26의 3(축산자조활동자금의 지원)

#### 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992~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
사업량	3개 축종	5	5	7	7	7	
사 업 비	계	17,875	7,054	15,998	27,200	27,000	46,600
	보 조	7,489	3,525	7,774	13,600	13,500	23,300
	자부담	10,386	3,529	8,224	13,600	13,500	23,300

## 5.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### 가. 사업내용

#### 1) 배경

-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(젖소, 돼지, 닭)분야 자조금 사업 실시
-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(2000.6.1) 개정을 통한 축산물 자조금 근거 규정 마련
-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(2002.5.13)이 제정되어 축산자조활동자금 법적근거 마련 및 시행령·시행규칙 공포(2002.11.14)

#### 2) 지원대상

-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,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

#### 3)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

-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,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,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

- 축산물(우유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, 쇠고기, 오리고기, 녹용 등)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내에서 보조지원

#### 4) 자조활동자금의 재원

-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
-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
-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
- 자조활동자금 운용수익금 등 그밖의 수입

5)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용도

- 축산물 소비홍보
-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
-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그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6) 자조활동자금의 운용

-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
-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활동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착수 및 추진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, 사업추진 기관 및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하여 축산단체가 사전 협의하도록 함.
- 자조활동자금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운용함.
  -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·계리
  -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, 축산업자의 거출금 및 촉발기금 보조금 등을 입금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관리하도록 함.
  - 축산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(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·승인)을 얻어 공시
  - 축산단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(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·승인)을 얻어 공시

7) 세부시행계획 내용(예시)

① 소비촉진 홍보사업

- 소비홍보에는 특히, 비선호 부위(수출부위) 소비 활성화 및 축산업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TV, 라디오, 신문, 잡지 등 광고와 홍보 팸플릿 제작 배부 등 내용 포함
- 요리개발 및 홍보에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요리 개발과 비선호 부위에 대한 요리 개발 등 소비 촉진을 위해
  - 소비홍보 이벤트 행사와 병행한 비선호 부위 요리경연대회 개최, 여성단체·음식협회·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한 요리 시식회 및 요리 강습회 개최,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선호 부위 소비촉진 시식사업 실시와 TV 광고 및 방송사 취

재유도, 음식점과 주부들에게 요리책자·팸플릿 제작 배부 등 내용 포함.

② 축산업자·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

-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산업 등록제 및 친환경축산 교육 등을 통한 환경 및 위생 개선, 축산관련 전문 신문, 잡지 등에 계도 광고, 홍보물 제작 배부, 시·도별 축산농가 교육, 단체별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, 항생제 잔류의 문제점 등 농가 교육 내용 포함.
- 생산자 교육에는 자조활동자금의 조기정착 및 시행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별 자조금 설명회, 의무자조금의 경우 도축장 대상 사업 설명회, 자조금 거출 홍보물 제작·배부 등 축산농가에 대한 자조활동 사업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 내용 포함.
- 정보 제공에는 선진 사양관리 기술 보급 및 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월간지 발행, 양축농가 계도 홍보물 제작·배부, 질병, 사양기술, 현안문제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등 내용 포함.

③ 조사·연구사업

- 소비홍보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내 소비현황 및 시장분석 등 소비 실태 조사, 축산물의 식품영양학적·의학적·한의학적 효능 연구 포함.
- 선진국의 축산업 실태와 경쟁력 비교 조사
  - 선진국의 축산물 생산정보, 기술수준, 수출진흥 전략,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등에 관한 조사·분석을 통하여 경쟁력 여건에 관한 정보 제공
- 수출전략 개발 및 해외시장 조사연구
  - 축산물 소비실태를 파악하고, 비선호 부위 소비 및 수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화에 기여
  - 해외시장 동향파악 및 축산 선진국의 자조금사업 운영, 축산 실태 조사

나. 2007년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2006년 촉발기금	2007년 사업비			자부담
		합계	촉발기금		
			소계	보조	
축산자조활동자금	13,600	27,000	13,500	13,500 (50%)	13,500 (50%)
- 한 우	4,000	10,000	5,000	5,000	5,000
- 젓 소	2,100	4,200	2,100	2,100	2,100
- 양 돈	4,800	10,000	5,000	5,000	5,000
- 산란계	1,350	600	300	300	300
- 육 계	1,000	2,000	1,000	1,000	1,000
- 오리	250	100	50	50	50
- 사슴	100	100	50	50	50

■ 담당부서 : (02)500-1907 축산경영과(양계자조금)

**축산물 유통개선사업(공공)**

① 도축·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

※ 사업명칭 변경 : (2006) 축산물 도축·가공업체 지원사업  
(2007) 도축·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

**1. 목적**

- 위생적인 도축·가공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
- 부분육·냉장육·브랜드육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
-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 및 경영개선 도모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
- 육가공장 등에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활성화

**2. 시책 및 추진방향**

- 영세하고 노후화된 기존 도축장 통·폐합 추진 및 기타 가축 도축기반 마련
- 고품질 및 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품 생산을 위한 가공업체 시설자금 지원
-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및 경영평가 등에 따라 차등 지원
- 고품질·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체에 원료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
- 계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계란등급제를 도입하여 등급단 수집 및 판매자금 지원
-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를 유업체에 이관시 적정수준의 계약공급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업체 경영부담 완화 도모

**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,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등**

**4. 연도별 지원계획**

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분	2005년	2006년	2007년(예산안)	
계	○ 사업량	168	183	170
	○ 사업비	182,361	188,717	160,928
	- 축발기금 용자	170,666	178,238	153,020
	- 지방비	-	-	-
	- 자부담	11,695	10,479	7,908
시설 자금	○ 사업량	19	22	23
	○ 사업비	38,983	34,929	26,358
	- 축발기금 용자	27,288	24,450	18,450
	- 지방비	-	-	-
	- 자부담	11,695	10,479	7,908
운영 자금	○ 사업량	149	161	147
	○ 사업비	143,378	153,788	134,570
	- 축발기금 용자	143,378	153,788	134,570
	- 지방비	-	-	-
	- 자부담	-	-	-

**5.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**

〈사업개요〉

**가. 사업내용**

①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

② 도축장 시설보완

③ 축산물가공업체 시설

- 1) 사업대상자 : 고품질·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축산물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·저장시설, 운송·장비 등 시설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업체중 시설증축 및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
- 2) 지원조건 : 연리 3~4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(용자 70%, 자담 30%)
- 사업기간 : 1~3년(사업계획에 의함)
- 지원액 :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·반영
- ※ 지원금리 : 생산자 3%, 일반업체 4%

3) 지원대상자 선정기준

- 도축장 부지내외 육가공장(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) 운영현황, HACCP 적용 또는 계획여부 등 (별첨 4)의 선정기준표상의 각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득점 사업자순부터 지원대상자를 선정함.
- 시·도지사는 (별첨 4)의 선정기준표상의 각 항목 등을 직접 확인 및 작성후 농림부에 제출하되, 관련 증빙서류는 시·도에서 보관하고 농림부에는 미제출

4) 지원내용

-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 신축 및 개보수비, 가공·저장시설, 운송·장비 등 생산장비 지원
- 5)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: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 신용조사서(별첨2) ⑤ 선정기준표(시·도지사 작성) ⑥ 기타 관련자료 등

※ (별첨2)의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

- 사업계획서내에는 사업개요, 가공장 시설계획, 시설내 용과 자금조달 계획, 원료육 확보 및 판매계획(직판장 또는 가맹점 설치계획 포함), 사업시행일정,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(5개년) 등이 포함되어야 함.
- 사업주관기관은 사업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농림부에 보고

④ 계란집하장 시설

⑤ 유제품 개발·생산시설

⑥ 도축장 운영자금

1) 사업대상자

-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상위등급(33%) 및 중위등급(33%)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로서 소·돼지 도축장의 경우 업체당 2006년도 도축실적이 일정수준 이상(소 6,000두/년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/년이상)인 경우에만 지원

- 단, 2006년도에 도축장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도축실적이 상기 기준 미만시 2006년도 지원금액의 50%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
※ 소·돼지 도축장은 총 지원받는 업체의 도축능력의 합(소 또는 돼지 기준)이 2006년도 전국 도축물량(소 또는 돼지기준) 범위내에서 제한하여 지원함.

- 2) 지원조건 :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등급에는 0% 금리, 중위등급에는 3% 금리 지원, 1년거치 일시상환(공통)

※ 당해연도에, 동일업체는 도축장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과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(원료구매자금) 이중 지원신청 불가

3) 지원단가

가) 정부지원 7개 LPC(안성, 청원, 홍성, 김제, 군위, 원주, 제천) : 50억원이내

- LPC내 육가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(임차)하는 육가공업체 및 LPC주체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생산·구매·판매 등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와 무관하게 LPC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3% 금리로 지원

나) LPC를 제외한 일반 도축장 : 20억원 이내에서 지원

4)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

- 시·도지사는 도축업체의 사업신청서상에 실적 및 자금운영계획 등을 정확히 심사한 후 동 신청서(별첨 5)와 선정기준표(별첨 6)를 농림부에 제출(실적 등 증빙자료는 시·도에서 보관하고 농림부에는 미제출)

- 농림부장관은 업체별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·통지

5) 지원용도

- LPC의 경우 LPC 건설부채상환, 원료구매자금, HACCP 운용비용 및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등으로 사용
- 일반도축장은 HACCP 운용비용,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및 원료구매자금 등 제반 운영자금

6) 사업신청시 제출서류

- 업체 : 사업신청서(별첨 5) 및 증빙서류를 시·군·구(시·도지사)에 제출
- 시·도지사 : 사업신청서(별첨 5) 및 선정기준표(별첨

6)를 농림부에 제출

- 선정기준표는 시·도지사가 작성하고 업체의 증빙서류는 시·도에서 보관하고 농림부에는 미제출

⑦ 오리도축·가공장 운영자금

1) 지원조건

- 연 3~4%, 1년거치 일시상환

지원금리 : 생산자 3%, 일반업체 4%

2) 지원대상

- HACCP 적용·운영 중인 오리 도축·가공장
- 단, 2006년도 도축실적이 1,500천수/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

3) 지원자금의 용도 및 운용

- 오리도축·가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자금으로 사용(HACCP 운용비용, 원료구매자금, 일반관리비 등)

- 원료구매자금 지원기준

- 월 원료구매 소요액 수준

4) 사업시행

- 사업계획서(자금사용계획 등)를 첨부하여 시·도에 신청(별첨 7 서식)

- 시·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

- 농림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자금 지원

-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기관에 용자신청을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자금집행

⑧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

1) 사업대상자

- HACCP 지정 식품포장처리업 또는 HACCP 지정 식육가공업체로서 고품질·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

- 단, HACCP 미지정업체가 2006년도에 동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006년도 지원금액의 50% 범위내에서 지원가능

- 2) 지원용도 : 원료구매자금, HACCP등 시설운영비용, 일반관리비 등

- 3) 지원조건 : 연리 3~4%, 1년거치 일시상환

※ 지원금리 : 생산자 3%, 일반업체 4%

※ 당해연도에 동일업체는 도축장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과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(원료구매자금) 이중 지원신청 불가

4) 지원액 결정

- 식품포장처리업 : 전년도 지원액, 전년도 원료육 구매 실적, HACCP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비율 등

- 지원규모액은 원료육 구매실적 50%, (별첨 8)의 사업 신청서상의 원료육 도축장 득점비율 50%를 적용하 되, 전년도 지원 업체의 경우 업체의 상환 등을 감안 하여 전년도 지원액을 고려하여 조정가능
- 식육가공업 :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결정 하되, 전년도 지원업체의 경우 업체의 상환 등을 감안 하여 전년도 지원액을 고려하여 조정가능

5) 신청서류

- 업체 : 사업신청서(별표 8) 및 사업신청서상 각 항목별 관련증빙서류
  - 도축검사증명서, 원료구매대장(또는 생산실적 보고 문서)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
-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상의 각 항목 등을 직접 확인 한 후 부정확한 경우 수정·보완후 농림부에 사업신청서 를 제출하고, 관련증빙서류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보관

6) 사업주관기관 :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, 한국육가공협회

9)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

10) 유업체 경영안정자금

나. 2007년도 사업비(예산안) 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내용별	사업량 (개소)	사업비					예산운영 소관부서	
		사업비 합계	예산액(축발기금)			지방비		자부담
			계	보조	용자			
계	170	160,928	153,020	-	153,020	-	7,908	
시설 자금	소계	23	26,358	18,450	-	18,450	-	7,908
	○ 도축장시설현대화	2	5,715	4,000	-	4,000	-	1,715
	○ 도축장시설보완	7	3,500	2,450	-	2,450	-	1,050
	○ 축산물가공시설	14	17,145	12,000	-	12,000	-	5,145
	- 축산물가공업체	7	8,572	6,000	-	6,000	-	2,572
	- 계란집하장	6	6,858	4,800	-	4,800	-	2,058
- 유제품개발·생산시설	1	1,715	1,200	-	1,200	-	515	
운영 자금	소계	147	153,020	153,020	-	153,020	-	-
	○ 도축장	85	63,750	63,750	-	63,750	-	-
	○ 오리도축·가공장	4	1,670	1,670	-	1,670	-	-
	○ 축산물가공업체	53	40,000	40,000	-	40,000	-	-
	○ 계란등급시설	5	2,550	2,550	-	2,550	-	-
	○ 유가공업체	84	26,600	26,600	-	26,600	-	-

2 축산물등급판정

1. 목적

-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 축산물을 품질고 급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 제고
- 축산물의 등급별 구분판매와 냉장유통 추진으로 국내 산 축산물의 소비기반 확보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축산물등급제의 조기 정착으로 품질고급화 실현
-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정착
- 계란 및 닭고기 등급제 추진
- 등급제 교육 및 홍보 실시

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28조 및 제29조(축산물등급판정)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992~ 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 (예산안)	
사업량	1	1	2	3	2	1	
합 계	76,211	13,492	13,618	14,147	14,385	14,184	
축산물 등급판정	계	76,211	13,492	13,520	13,887	14,203	14,184
	보조 용자	-	-	-	-	-	-
	지방비	-	-	-	-	-	-
	자부담	-	6,200	5,696	5,372	7,009	6,935
우수 축 산물 브 랜드 인 증사업	계			98	200	182	
	보조 용자			98	200		
	지방비			-	-	182	
	자부담			-	-	-	
브랜드육 포장재 지원	계				200		
	보조 용자				60		
	지방비				-		
	자부담				140		

5.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

<사업개요>

가. 사업내용

- 등급판정소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축단계에서의 소· 돼 지 등급판정
- 계란, 닭고기 등급판정 및 쇠고기부분육확인 추진
- 소매단계에서 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실시 홍보
- 등급판정 기술개선 및 등급판정 결과를 출하자에 통보
- 생산농가, 유통업자,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나. 2007년도 사업비(예산안)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내용별	사업량	사업비					
		사업비 합계	예산액(축산발전기금)			지방비	자부담
			계	보조	용자		
계		14,184	7,249	7,249	-	-	6,935
등급판정소운영	1개소	14,184	7,249	7,249	-	-	6,935

■ 담당부서 : (02)500-1917~19 축산물위생과

**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(공공)**

② 가축계열화사업

1. 목적

-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·가공·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 사업 추진
-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계열주체를 육성

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991~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(예산안)	2008년 계획
닭·오리	사업량 18 금액 130,096	1 1,761	5 13,300	3 7,000	5 13,300

※ ( ) 내는 지원업체 중 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·지원된 업체수

5.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가. 사업개요

1) 사업내용

- 자금지원대상자 : 가축계열화 사업자
- 지원내용 및 조건 : (별표 1) 참조
- 대상축종 : 돼지, 닭, 오리

2) 대상자선정

(가) 신청자격

-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(농림부고시 제 2003-10)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

〈제한사항〉

- 닭·오리 신청업체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(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, 닭은 500천수, 오리는 200천수 이상)이 있어야 한다.
-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.

- 농업법인(영농조합, 농업회사법인 등)은 농림사업실시규정 (별표 3)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-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경영자금 등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(단, 시설비는 지원가능)

〈우선지원 요건〉

-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-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-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·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
- 도축장, 사료공장, 종돈장,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 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
-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

(나) 신청절차

-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격요건,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·군·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신청
- 시·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신청

(다) 사업타당성 검토

- 농림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계·업계·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(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 협조)
-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
  - 주요심사내용 : 계열주체 자격요건, 부지확보여부, 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, 계열요소 구비사항, 사업계획서 타당성, 계열농가와의 계약여부, 경영기록사항, 자금상환능력 등

3) 자금지원방법

① 계열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

-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.
-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.
  -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은 계열주체의 사육·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가능

- ② 계열주체를 통해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
  -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 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,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해야 함.
    -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하되 계열주체의 신용보증 등으로 대출이 가능

4) 2007년도 사업비(예산안)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축종	사업비	축산발전기금		지방비	자담
		보조	용자		
닭·오리	10,000	-	7,000	-	3,000

5) 기타사항

-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 것,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(신규 및 보완사업)
  - 정부시책 방향과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가능
  - 계열사업 완성년도, 년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, 년도별 시설 설치계획,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(축발기금, 자부담구분)을 명시
- 사업추진규모
  - 닭(육계) : 연간 육계 생산·처리능력 4,000천수(농가는 25호) 이상
  - 닭(산란계) : 연간 계란 생산·처리능력 150백만개(농가는 25호) 이상
  - 오리 : 연간 오리 생산·처리능력 1,000천수(농가는 15호) 이상
- 사업추진 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
  - 닭·오리 :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·새끼오리를 생산·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·종오리장과 부화장(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해야 함)

나. 추진체계

- 1)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지사
- 2) 사업 담당부서
  - 농림부 : 축산경영과(닭·오리 : 02-500-1907)
  - 시·도 : 도 축산과, 광역시 농정과(축산계)
  - 시·군·자치구 : 축산과 또는 축산담당(축산계)
- 3) 사업시행
  - (가) 사업계획의 수립

-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
-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
-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(고유 브랜드)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.
-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 확보
  -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해야 함.
- 사업계획의 조정 :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

(나) 계열화업체의 준수사항

- 협의체 구성
  -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도록 지도해야 함.
  -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, 자재공급, 농가와와의 계약 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
  -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, 계약체결,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
- 계열화 업체의 이행사항
  -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
  -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,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해야 함.
  -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를 통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·비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.
  -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,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.
  -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(자체구매, 판매알선)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함.
  -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 공·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

[별표 1]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

구분	지원범위	지원조건	비고
1. 계열주체 사육 시설	○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 시설 - 사무실,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※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3년거치 7년균분 상환	
2. 계열농가 생산 시설	○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 3%(변동이 있을 수 있음)	지원조건은 농업융합자금지원사업과 동일
3. 가공시설 (육가공 공장, 난가공장, 계란집하장 등)	○ '도축·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' 사업과 동일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※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3년거치 7년균분 상환	
4. 유통시설	○유통에 필요한 판매장·시설·장비 등	"	
5. 계열화 사육비	○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○자축구입비, 사료비, 약품비, 위탁사육수수료 등	- 총사업비의 50%이내 - 연리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※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2년이내 상환	

※ 사료제조시설, 상기 지원내용이의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

③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사업

1. 목적

-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반브랜드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
-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위한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및 육성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
- 인증 현지실사 대상경영체 선정 및 현지실사
- 우수 축산물 인증브랜드 선정
- 우수 축산물브랜드 소비홍보대회를 개최하여 인증브랜드 발표 및 홍보

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(축산시책의 강구)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(예산안)	2008년
사업량	-	2	1	1	
합계	-	400	182	183	
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	계	-	200	182	183
	보조	-	200	182	183
	융자	-	-	-	-
	지방비 자부담	-	-	-	-

5.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

<사업개요>

가. 사업내용

-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·운영
- 브랜드인증 신청업체 현지실사를 통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
- 축산물브랜드 종합정보서비스(자가진단프로그램)를 활용하여 브랜드 관리
- 우수 축산물브랜드 소비홍보대회를 개최하여 인증브랜드 발표 및 홍보

나.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07. 1월 ~ 2007. 12월
- 지원형태 : 보조 100%
- 지원조건 : 정액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물브랜드 경영체

<추진체계>

가. 사업 담당기관 : 소비자단체

- 협조 : 축산물등급판정소

나. 사업 담당부서

-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(Tel. 02-500-1925~27)
- ※ 축산물등급판정소(Tel. 031-390-5500)

다. 사업추진 절차

- 1)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
  - 소비자단체 주관하에 축산물브랜드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지침 마련
    - 위원회 : 소비자단체, 생산자단체, 유통업계,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

2) 브랜드 인증절차

① 인증신청	• 브랜드경영체는 인증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시·도에 제출
② 시·도 확인 및 추천	• 시·도는 신청자료를 검토하여 인증기준 등에 부합한지를 확인 • 시·도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영체 중 우수한 경영체를 선정하여 소시모에 추천
③ 서류심사	•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축종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체를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
④ 현지실사	• 현지실사단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3회 이상 사전예고 없이 수시 방문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
⑤ 인증심의 및 선정	• 위원회에서는 현지실사단의 평가결과 및 자가진단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여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로 선정
⑥ 인증 브랜드 발표	• 위원회는 "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발표회"를 개최하여 우수 축산물 인증브랜드 발표



④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

1. 목적

-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, 재무,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시장지향성 강화·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도모
- 규모화·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·지원하여 우수 축산물브랜드 벤치마킹 유도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산지축산물생산유통·지원사업(브랜드사업) 지원 경영체를 우수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
- 대부분 브랜드 경영체에서 취약한 경영, 마케팅 등에 대한 관리수준을 높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축산업 부가가치 제고

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992~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 계획	
사업량	-	10개소	10개소	10개소	10개소	
사업비	계	-	1,000	1,000	1,000	1,000
	보조	-	500	500	500	500
	지방비	-	200	200	200	200
	자부담	-	300	300	300	300

5.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가. 사업내용

1) 배경

- 소비자의 기호가 위생·안전·품질로, 유통형태는 지육에서 부분육·소포장으로, 유통경로는 대형할인점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축산물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
- 농장에서 식탁까지 브랜드관리가 우수한 브랜드를 중점 육성하여 소비자와 유통업체로부터 신뢰받는 선진화된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

2) 지원대상

- 브랜드사업(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) 선정 경영체 -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

3)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

- 사업량 : 10개소

- 사업단가 : 1억원 이내(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)
- 지원비율 : 기금보조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

나. 2007년도 사업비(예산) 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내용별	사업량	사업비			
		합계	보조	지방비	자부담
축산물브랜드컨설팅 지원	10개소	1,000	500	200	300

- 담당부서 : (02)500-1925~7 축산물위생과

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경영안정(공공)

① 가축질병근절대책

1. 목적

- 민간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·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,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체제로 전환
- 구제역·돼지콜레라·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
- 도축장에서 생체·해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위한 전문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선진국형 도축검사체제로 전환
- 도축장 출하소의 SRM 제거 및 정밀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
- 가축방역대책 및 소부루세라 근절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평가·포상 실시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민·관 공동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방역단체 운영 지원
  -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·인건비·자산취득비 등 지원
- '전국일제소독의 날'의 정례적 운영 지원
  - 소독약품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(4,017개단) 운영비 지원
-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규정 위반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
  - 신고 사안별로 20~100만원 포상금 지급
- 도축장 출하소의 SRM 제거시설·장비 지원(도축장 1개소 선정)

- 가축방역 및 소부루세라 근절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·포상 실시

3. 근거법령

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(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) 및 축산법 제39조(기금의 용도)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992~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(예산안)
사업량							
사	계	28,011	20,075	26,052	27,077	34,678	35,222
보	조	24,755	12,071	18,845	19,437	25,948	25,576
업	용	-	-	-	-	-	-
비	지	-	6,300	6,300	7,390	8,530	9,546
지	부	3,256	1,704	907	250	200	100
부	담						

5.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

<사업개요>

가. 사업내용

-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원사업
  - 사업내용 : 방역본부 운영비·인건비·자산취득비 등 지원
  - 지원대상 : 본부(19명), 8도본부(32명), 40출장소(방역요원 205명, 도축검사보조원 130명) 운영비·인건비 및 기자재 지원
  - 지원조건 : 운영비·인건비 및 기자재 100% 보조(단, 출장소 방역요원,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40% 부담)
  - ※ 방역요원 및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내역(별표)
-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사업
  - 사업내용 : 매주 수요일을 '전국일제소독의 날'로 지정, 양축농가의 자율적인 일제소독 지도
  - 소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농가는 소독약품 공급(30회) 및 공동방제단(4,017개단) 운영(운영비 지원 연 18회)으로 소독 지원
  - 지원대상 : 농협(소독약품)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(운영비)
  - 지원조건 : 소독약품(국비 100%), 공동방제단 운영비(국비 50, 지방비 50)
- 전염병 발생신고·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포상금 지급사업
  - 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·광우병 등 발생신고자, 예

방접종·이동제한 등 방역규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(건당 20~100만원, 국비 100%)

- 도축장 출하소의 SRM 제거시설·장비 지원사업
- 가축방역 우수지자체 포상사업(국비 100%)
  - 가축방역사업 : 총 39개소(도 3, 시험소 6, 시·군 30) 평가 및 포상

나. 2007년도 사업비 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사업량	2007년사업비			비고
		국비	지방비	계	
계 (3741)		23,036	9,591	32,627	
□ 방역본부운영지원(3741-337)		4,063	-	4,063	
○ 인건비(일반정규직)	51명	2,208	-	2,208	
○ 운영비	1본부 8도본부 40출장소	1,802	-	1,802	
○ 자산취득비	컴퓨터 30대 등	53	-	53	
□ 방역본부운영지원(3741-436)		3,811	2,541	6,352	
○ 인건비(방역계약직)	205명	3,811	2,541	6,352	지방비 40%
□ 가축질병근절사업(3741-338)		7,712	-	7,712	
○ 채혈기자재(방역본부)	방역복 14 만발 등	1,127	-	1,127	
○ 개인소독약품(방역본부)	1.5톤	30	-	30	
○ 환경측정장비운영(방역본부)	암모니아 측정기센 서 130개 등	69	-	69	
○ 소부루세라이표(방역본부)	300천개	372	-	372	
○ 신고포상금	50건	10	-	10	
○ 전국일제소독약품	30회	5,533	-	5,533	
○ 가축방역특별포상	39개소	281	-	281	
○ 부루세라특별포상	30개소	290	-	290	
□ 가축질병근절사업(3741-437)		7,450	7,050	14,500	
○ 공동방제단지원	18회	6,750	6,750	13,500	지방비 50%
○ SRM제거시설	1개소	700	300	1,000	지방비 등 30%
계 (3738)		2,286	1,488	3,774	
□ 도축검사원운영지원(3738-432)		2,286	1,488	3,774	
○ 인건비	130명	2,233	1,488	3,721	지방비 40%
○ 운영비		53	-	53	

- ㉔ 축산물검사 부터는 다음호에 계속...